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7. 6.

제1차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7. 3.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6. 7. 6.

다. 상정일자: 제28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2026. 7. 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

가. 제안이유

- 민선9기 구정비전인 「다시 뛰는 마포! 함께하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환경 변화와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요 국·부서 개편(안)

- (국 폐지) 환경녹지국 폐지
- (부서 신설) 청년정책과, 통합돌봄과
- (부서 통합) 새마포담당관 + 예산정책과 → 기획예산과
깨끗한마포과 + 자원순환과 → 청소행정과

○ 국 명칭 변경

- 행정지원국 ⇒ 행정관리국
- 재정관리국 ⇒ 기획재정국
- 관광경제국 ⇒ 문화경제국
- 교육체육국 ⇒ 미래교육국
- 복지동행국 ⇒ 복지국
- 도시관리국 ⇒ 도시환경국

○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부서 명칭 변경

- | | |
|------------------|------------------|
| -행정지원과 ⇒ 총무과 | -경제진흥과 ⇒ 지역경제과 |
| -실뿌리복지과 ⇒ 생활보장과 | -어르신동행과 ⇒ 어르신정책과 |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정책과 | -주택상생과 ⇒ 주택과 |
| -건축지원과 ⇒ 건축과 | -맑은환경과 ⇒ 환경과 |
| -주차관리과 ⇒ 교통지도과 | -보행행정과 ⇒ 건설관리과 |
| -도로개선과 ⇒ 도로과 | -물관리과 ⇒ 치수과 |
| -건강동행과 ⇒ 건강증진과 | |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6. 7. 1. ~ 7. 2. (제출된 의견 없음)
-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해당없음
-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① 조례의 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제1차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민선9기 구정비전인 「다시 뛰는 마포! 함께하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환경 변화와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임.

② 주요 제정 내용

- 부서 간 유사 기능 통합·재편성으로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
 - 유사·중복 업무 통합을 통한 1개국 축소
 - 깨끗한마포과와 자원순환과로 분리 운영되던 조직을 일원화
- AI 기반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스마트 행정 구현
 - AI 기반 행정비서 ‘마포 브레인’ 구축 및 산하기관 AI 기반 운영체계 구축
 - AI 기반 보건소 통합돌봄 구현
-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행정 강화
 - 65세 이상 노인가구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그냥 해 드림센터’ 설치
 - 통합돌봄 사업 선도적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통합돌봄과’ 설치
 - 서울시 자치구 최초의 자살 예방 전담 조직인 ‘마음돌봄팀’ 신설
- 청년의 성장·자립 지원 정책 추진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청년지원 행정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청년정책과’ 신설
 -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한 공유오피스 확대 및 마포구 뉴패러다임 펀드 추진

③ 조례안의 기대효과

- 민선9기 구정 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특히 AI 기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디지털 행정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청년 지원체계 강화, 통합돌봄 및 1인 가구 돌봄 기능 강화 등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정책 중심의 조직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④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 조례안은 민선 9기 구정 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 및 기능 재조정을 시행하고, 기존 8국 2담당관 37과 158팀에서 7국 2담당관 37과 158팀으로 변경하고 1개국 축소 개편, 6국 명칭변경, 구간부서 이동 8과 5팀, 부서 개편 신설2개, 통합 4개, 명칭 변경 15개, 팀 개편 신설 7개, 분리 2개, 통합 10개, 폐지 4개, 부구청장 직속 2담당관 8팀에서 2담당관 7팀 1개 팀 축소로 재조정하는 내용으로, 국, 과, 팀 명칭 변경은 전반적으로 구민이 볼 때 알기 쉬운 이름으로 변경되었다고 판단 됨.
- 다만, 8국에서 7국으로의 축소는 직원들의 업무가 과도하게 편중되지는 않았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조직담당부서의 의견도 수렴하여 불편함도 개선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

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 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22. 4. 19.>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시·군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국의 수
시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상 8개 이하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상 9개 이하
군	인구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구	특별시의 자치구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비 고

1. 시·군·구별 실·국의 수는 위 표의 실·국의 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무의 성질과 양, 기구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통보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율을 고려해야 한다.
2.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위 표의 최소 기준보다 적은 수로 실·국을 설치할 수 있다.
3. 실·국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4. 법 제10조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군이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해당

시에 대하여 시로 된 날부터 2년간은 위 표의 시(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기구설치기준에서 1개의 실·국(인구 15만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을 감하여 적용한다.

5. 법 제1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가 별표 6 제2호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경우(해당 출장소의 관할 인구가 7만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위 표의 실·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6.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구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8.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동안 1개의 실·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실·국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그 존속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실·국의 폐지 또는 존속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비 고

1.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이 제1호의 설치기준에 따른 실·국 중 1개 이상의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국 중 감축된 수 만큼에 해당하는 실장(과장급)·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이거나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간은 면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7만 이상의 읍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과장을 5급(읍장이 4급인 경우)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과장을 5급(읍·면·동장이 4급인 경우) 또는 6급(읍·면·동장이 5급인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부읍장·부면장은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과장)이 겸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과장으로 두는 경우에는 해당 과장 중 1명이 부읍장·부면장을 겸한다.
5. 제6조제8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과장은 제외한다)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6.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인구가 120만명 이상

인 시의 경우에는 4명)의 범위에서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인구가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인 시의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8년(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로 4년을 연장할 수 있다)간은 합쳐지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7.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가 실·국의 설치기준보다 1개 실·국을 감축(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두었던 한시기구를 감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8. 제6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가 실장(국장급)·국장을 4급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의 범위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8의2.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제8호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자치구가 아닌 구에 대해 그 구청장을 보좌하는 1명의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제8호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모든 구

나. 가목 외의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의 경우: 제8호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구 중 1개의 구

9.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 1명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의 범위에서 기획, 지역경제 업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26-66
번 호	관련

발의년월일: 2026. 7. 6.

발 의 자: 차혜영 의원

1. 수정이유

부칙 제3조 제3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8항부터 제56항까지를 각각 제17항부터 제54항까지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내용

가. 부칙 제3조 제3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8항부터 제56항까지를 각각 제17항부터 제54항으로 수정

나.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3조제16항 중 ““청소행정과장”으로”를 ““청소행정과장”으로, 제5조의2제4항제1호 중 “예산정책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6조제2항 중 “자원순환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재활용관리팀장”을 “자원재활용팀장”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8항부터 제34항까지를 각각 제17항부터 제3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6항부터 제56항까지를 각각 제34항부터 제5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9항(중전의 제51항)부터 제54항(중전의 제5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제9조제3항 중 “실뿌리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어르신동행과장”을 “어르신정책과장”으로, “장애인복지과장”을 “장애인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예산정책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제10조제4항 중제2호 중 “예산정책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0조제4항제4호 중 “도로개선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복지동행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복지동행국장”을 “복지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구본청·보건소의 국·담당관·과 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구본청·보건소의 국·담당관·과 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고용협력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제9조제3항 중 “복지동행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고용협력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제9조제3항 중 “복지동행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동행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새마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3조제2항제4호 중 “주차관리과장”을 “교통지도과장”으로, 제3조제2항제5호 중 “도로개선과장”을 “도로과장”으로, 제3조제2항제6호 중 “물관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 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동행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새마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3조제2항제4호 중 “주차관리과장”을 “교통지도과장”으로, 제3조제2항제5호 중 “도로개선과장”을 “도로과장”으로, 제3조제2항제6호 중 “물관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 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차관리과장”을
“교통지도과장”으로, 제7조 중 “운
수질서관리팀장”을 “운수관리팀
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예산정책과
장, 보행행정과장”을 “기획예산과
장,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도로개선과장”을
“도로과장”으로, 제8조3항 중 “예
산정책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
로, “도로개선과장”을 “도로과장”
으로, “물관리과장”을 “치수과장”
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제2항 중 “주차관리과장”을
“교통지도과장”으로, 제7조 중 “운
수질서관리팀장”을 “운수관리팀
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예산정책과
장, 보행행정과장”을 “기획예산과
장,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도로개선과장”을
“도로과장”으로, 제8조3항 중 “예
산정책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
로, “도로개선과장”을 “도로과장”
으로, “물관리과장”을 “치수과장”
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별표 주관국란 중 “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을 “행정관리국(총무과)”으로, “복지동행국(어르신동행과)”을 “복지국(어르신정책과)”으로, “복지동행국(장애인복지과)”을 “복지국(장애인정책과)”으로, “관광경제국(경제진흥과)”을 “도시환경국(공원녹지과)”으로, “도시관리국(부동산정보과)”을 “도시환경국(부동산정보과)”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새마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새마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별표 주관국란 중 “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을 “행정관리국(총무과)”으로, “복지동행국(어르신동행과)”을 “복지국(어르신정책과)”으로, “복지동행국(장애인복지과)”을 “복지국(장애인정책과)”으로, “관광경제국(경제진흥과)”을 “도시환경국(공원녹지과)”으로, “도시관리국(부동산정보과)”을 “도시환경국(부동산정보과)”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새마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새마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새마포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제4조제1항 중 “새마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6조제1항 중 “새마포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제7조 중 “새마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새마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공무

개정한다.

제2조 중 “새마포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제4조제1항 중 “새마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6조제1항 중 “새마포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제7조 중 “새마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새마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공무

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깨끗한마포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제3조의2제4항제1호 중 “예산정책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맑은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제10조2항

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깨끗한마포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제3조의2제4항제1호 중 “예산정책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맑은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제10조2항

중 “자원순환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제12조2항 중 “자원순환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①⑥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자원순환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①⑦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1호 중 “예산정책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6조제2항 중 “자원순환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재활용관리팀장”을 “자원재활용팀장”으로 한다.

중 “자원순환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제12조2항 중 “자원순환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①⑥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자원순환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제5조의2제4항제1호 중 “예산정책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6조제2항 중 “자원순환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재활용관리팀장”을 “자원재활용팀장”으로 한다.

①⑦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깨끗한마포

⑮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깨끗한마포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맑은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물관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제8조 중 “맑은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예산정책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맑은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물관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제8조 중 “맑은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예산정책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㉑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재정관리국장, 복지동행국장, 도시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 복지국장, 도시환경국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재정관리국장, 복지동행국장, 도시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 복지국장,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재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제7조제2항 중 “예산정책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재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제7조제2항 중 “예산정책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재정관리국장, 복지동행국장”을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국장”으로, 제19조 중 “예산정책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

제12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재정관리국장, 복지동행국장”을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국장”으로, 제19조 중 “예산정책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동행국장, 도시관리국장,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관리국장, 복지국장, 도시환경국장, 총무과장”으로, 제7조제1항 중 “예산정책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㉖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다.

㉗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동행국장, 도시관리국장,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관리국장, 복지국장, 도시환경국장, 총무과장”으로, 제7조제1항 중 “예산정책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㉘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재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제7조제2항 중 “예산정책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행정관리국장”으로, “재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제7조제2항 중 “예산정책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㉓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복지동행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재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제9조제4항 중 “복지동행국장”을 “복지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㉕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

㉖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복지동행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㉗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재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제9조제4항 중 “복지동행국장”을 “복지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재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㉙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재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재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경제진흥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경제진흥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제17조제2항제2호 중 “디지털재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재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경제진흥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경제진흥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제17조제2항제2호 중 “디지털재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 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가족행복지원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가족행복지원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③④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복지동행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③⑤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깨끗한마포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맑은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물관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③⑥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복지동행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③④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제8조 중 “맑은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③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동행국장”을 “복지국장”으로, 제12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업무”를 “장애인정책업무”로 한다.

③⑥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제8조 중 “맑은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㉟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동행국장”을 “복지국장”으로, 제12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업무”를 “장애인정책업무”로 한다.

㊱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실뿌리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㊲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동행국장”을 “복지국장”으로, 제3조제4

제12조제2항 중 “실뿌리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㊳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동행국장”을 “복지국장”으로, 제3조제4항 중 “실뿌리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㊴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동행국장”을 “복지국장”으로, “실뿌리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㊵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복지동행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㊶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

항 중 “실뿌리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④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동행국장”을 “복지국장”으로, “실뿌리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④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복지동행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④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제1호 중 “복지동행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④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제1호 중 “복지동행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④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중 “통합지원 업무담당 팀장”을 “통합지원협의체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4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제4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④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중 “통합지원 업무담당 팀장”을 “통합지원협의체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④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4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제4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④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④⑥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④④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④⑤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홍보미디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예산정책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9조제1항 중 “홍보미디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조란 중 “홍보미디어과장”을 “홍보담

④⑦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홍보미디어
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예산
정책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9조제1항 중 “홍보미디어과장”
을 “홍보담당관”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조란 중
“홍보미디어과장”을 “홍보담
당관”으로 한다.

나. 별지 제7호서식의 참조란 중
“홍보미디어과장”을 “홍보담
당관”으로 한다.

다. 별지 제8호서식의 참조란 중
“홍보미디어과장”을 “홍보담
당관”으로 한다.

라. 별지 제9호서식의 참조란 중

당관”으로 한다.

나. 별지 제7호서식의 참조란 중
“홍보미디어과장”을 “홍보담
당관”으로 한다.

다. 별지 제8호서식의 참조란 중
“홍보미디어과장”을 “홍보담
당관”으로 한다.

라. 별지 제9호서식의 참조란 중
“홍보미디어과장”을 “홍보담
당관”으로 한다.

④⑧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④⑨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7조제3항 중 “홍보미
디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④⑩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

“홍보미디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④⑧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④⑨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7조제3항 중 “홍보미디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⑤⑩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제6조제4항 중 “미디어채널팀장”을 “미디어팀장”으로 한다.

(51)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

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제6조제4항 중 “미디어채널팀장”을 “미디어팀장”으로 한다.

④⑨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제9조제3항 중 “실뿌리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어르신동행과장”을 “어르신정책과장”으로, “장애인복지과장”을 “장애인정책과장”으로 한다.

⑤⑩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예산정책

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제9조제3항 중 “실뿌리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어르신동행과장”을 “어르신정책과장”으로, “장애인복지과장”을 “장애인정책과장”으로 한다.

(5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예산정책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5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제10조제4항중제2호 중 “예산정책과장”을 “기

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제10조제4항중제2호 중 “예산정책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0조제4항제4호 중 “도로개선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복지동행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획예산과장”으로, 제10조제4항제4호 중 “도로개선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54)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55)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복지동행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56)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복지동행국장”을 “복지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복지동행국장”을 “복지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